

#### 첨부(1)

「건설기술진흥법」(이하 ‘건진법’)의 시행령 제100조 (안전점검의 시기·방법)의 ④ ‘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발주자, 해당 인·허가기관의 장,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